

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

「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」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3월 6일

서울특별시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명 : 2024년 서울 청년수당

□ 지원대상 : 만 19~34세 서울시 거주,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

※ 대학(원)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

※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(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)

○ 접수기간 : 2024. 3. 11.(월) 10:00 ~ 3. 18.(월) 16:00

※ 상황에 따라 1~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

○ 선정인원 : 20,000명 내외

□ 지원내용

○ (금전적 지원) 매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

○ (비금전적 지원)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

-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

○ 지원방법 : 체크카드(*클린카드) 사용

* 해외사용이 불가하고,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(호텔, 주점, 귀금속판매 등 46여개 업종)

2. 신청 자격 · 요건

□ 거주요건 : 신청일 기준,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

- ▶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
 - ※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

□ 신청연령 : 만 19세 ~ 만 34세 (1989. 3. 1.~2005. 3. 31. 출생자)

□ 졸업자 인정 요건

- 최종학력 졸업자(중퇴·제적·수료) 또는 졸업예정자(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)
 - 2024년 3월 전(2월 까지) 중·고교, 대학, 대학원 졸업·중퇴·제적·수료자
 - ※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(단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(2월까지)인 경우 신청 가능)

□ 소득요건

-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)
 - 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
 -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
 -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

|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중위소득 150%)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
| 1인 | 119,657원 | 61,984원 |
| 2인 | 196,672원 | 146,739원 |
| 3인 | 251,147원 | 210,599원 |
| 4인 | 304,986원 | 271,091원 |
| 5인 | 360,818원 | 332,772원 |
| 6인 | 422,318원 | 400,222원 |
| 7인 | 453,848원 | 433,430원 |
| 8인 | 543,979원 | 524,772원 |
| 9인 | 589,232원 | 567,285원 |
| 10인 | 659,065원 | 625,932원 |

※ 출처 : 2024년 2월 보건복지부

- ▶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

□ 취업여부

- 미취업 청년(고용보험 미가입자) 및 단기근로 청년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) 신청 가능
 -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(ex. 근로계약서 등)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

※ 사업참여 제외대상

-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(신청 시점 기준)
- 재학생 및 휴학생
 - * 단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
 - ** 아간대학 재학생·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
- 고용보험에 가입된,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
-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(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)
 - 서울시 「청년월세지원」 사업 참여자
 - 서울시 「희망두배 청년통장」 사업 참여자
 - 고용노동부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사업 참여자
 - 고용노동부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
- 2017년~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(생애 1회 지원)
-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 청년
 - * '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교육·주거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 (신청 시점 기준)

[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정의(중위소득 50% 이하)]

- 기초생활수급자 : 중위소득 30~50% 이하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분야 지원대상
- 차상위계층 : 중위소득 50%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

-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(신청 시점 기준)

3. 신청 방법 및 절차

□ **신청하는 곳** (청년몽땅정보통 > 금융·복지 > 청년수당 > 신청 바로가기)

○ 청년몽땅정보통(youth.seoul.go.kr) 접속 후, 온라인 접수

-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(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)

□ **준비서류 (2종)**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, '화면캡처본,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'은 인정되지 않음

① 최종학교(중고교·대학·대학원) 졸업증명서(또는 수료증) 1부 (필수제출)

- 졸업(중퇴·제적·수료)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
※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'준비 서류' 항목 확인 바람

※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'재적'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발급방법: 민원24(<http://www.minwon.go.kr>)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
-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졸업예정증명서 또는

② 성적증명서+재학증명서 제출

② 근로계약서 (단기근로자만 제출)

- 계약기간,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
※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

※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('24.3.18. 퇴직일까지 인정, 3.19. 퇴직일부터 미인정)

□ **신청 시 기입 정보 (필수)**

○ 주민등록상 이름, 거주지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

-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□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 (필수)**
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,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동의 체크

○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동의, 의무사항 등을 인지하고 사업 약정 체결 체크

□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(온라인 신청시 작성, 필수)

- 청년수당 사업기간 동안 활동계획,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

□ 사전 설문조사 (온라인 신청시 실시, 필수)

-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

4. 선정방법

□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

- 거주지, 연령, 소득, 졸업·취업여부,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
-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
 - ① 중위소득 85%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)
 - ※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
 -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

5. 선정 및 발표

- 예비선정자 발표 : 2024. 4. 5.(금) 18:00 (예정)
 - ※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
- 확인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“마이페이지”에서 확인
- 필수 이행사항
 -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(안내책자 다운로드)
 -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
 - ※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
-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: 4. 29.(월) (예정)
 - ※ 매월 29일 지급 원칙(29일이 휴일·공휴일인 경우, 직전 평일에 지급)

6. 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

※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

□ ‘자기활동기록서’ 매월 작성·제출(온라인, 청년몽땅정보통)

- (참여자 전체)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, 활동 계획 등 작성
 -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한은 매월 15일 ~ 익월 10일로 하며, 작성 마감일(10일)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
 -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(예외없음, 연장없음)

- * 5월 15일 ~ 6월 10일까지 미제출시 6월 28일에 수당 미지급
- * 6월 15일 ~ 7월 10일까지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
- * 7월 15일 ~ 8월 12일까지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
- * 8월 15일 ~ 9월 10일까지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

- (단기근로자)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(근로계약서 등) 제출
 -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)의 경우,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(주 몇회, 주 몇시간)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(근로계약서 등)를 제출 ※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재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
 -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(예외없음, 연장없음)

- * 5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
5월 15일 ~ 6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6월 28일에 수당 미지급
- * 6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
6월 15일 ~ 7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
- * 7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
7월 15일 ~ 8월 12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
- * 8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
8월 15일 ~ 9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

□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'자격상실신고서' 제출(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)

- 취업, 서울 외 거주,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즉시 신고
 - 자격상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연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
- ※ 단, 사업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. (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/ 마지막 월의 경우, 남은 1회분(50만원) 지급)
- 사업 종료시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(하루라도 이탈시 지급 중지)

[참고] 市에서도 매월 비대면 자격요건(블록체인) 조회를 통해 참여자 자격 확인
* 타시도 진출(서울시 미거주) 여부, 기초·차상위 및 실업급여 수급 여부, 정부·市 중복사업 참여 여부,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후 사후 발견되면 지급 중지

□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

-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(클린카드)만을 사용,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
 - (사용용도) 구직활동,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·간접 비용,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
 - (사용제한)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(클린카드 제한업종*, 자산 축적·운영 및 투자**,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*** 등)

* 클린카드 제한업종 : 호텔, 주점, 복권 판매, 피부미용, 마사지 등 46개 업종

** 자산 운영 및 투자 : 예·적금, 상품권, 충전식 결제, 세금연금보험료, 일반대출 상환

***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: 도박, 유흥, 사치 용도 등

- 현금사용(현금인출, 계좌이체)은 금지되며,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
 - ① 주거(전·월세비, 주거 관리비, 주거 관련 대출), ② 생활·공과금(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통신비, 건강보험료), ③ 교육(학자금 대출, 자격증·시험 응시료)에만 현금사용 가능,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
 - 위 항목에 현금사용시 자기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

[현금사용시 항목별 증빙서류]

- * 전·월세비 : 전·월세 관련 계약서 + 이체내역서
- * 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건강보험료, 통신비 : 납부고지서 + 이체내역서
- * 주거 관련 대출, 학자금대출 납부 : 대출 계약서류 + 이체내역서
- * 자격증·시험 응시료 : 수험표 및 응시서류 + 이체내역서

○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

-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
-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
- 위와 같은 부적정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,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

7. 기타 유의사항

-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·접수이며,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,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,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지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.
-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△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(☎1566-3344) △서울시 다산콜센터(☎120) 또는 △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'청년수당 Q&A', △온통청년센터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